

2026학년도 제4차

규정심의위원회

- 일 시: 2026. 4. 16.(목), 오후 3시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회의 개요 및 안건

- ◎ 일 시: 2026. 4. 16.(목), 오후 3시
- ◎ 장 소: 기획팀 회의실(문화관 204호)
- ◎ 안 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심의 「장학규정」 개정	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장	'10
2	심의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	학생복지팀	학생복지팀장	
3	심의 「스포츠단운영규정」 개정	스포츠지원센터	스포츠지원센터장 서경원 과장	'10
4	심의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장	'10
5	심의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	기획팀	기획팀장 박경찬 과장	'10
6	심의 「직제규정」 개정	기획팀	기획팀장 이승인 과장	
7	심의 「대학원 학칙」 개정	교학팀	교학팀장	'20
8	심의 (연관)「직제규정」 개정			
9	심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			'20
10	심의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 제정			'25
1	심의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정			'25

◎ 추후 일정

심의기구(순)	일정
교무위원회	- 2026. 4. 28.(화)
대학평의위원회	- 2026. 4. 28.(화) / 학칙 해당
법인이사회	- 2026. 4월 말(학칙, 직제, 인사,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

※ 학칙 및 직제규정: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

규정 입안서

규정명	「장학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학생복지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현재의 장학금 신청 방법을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소정의 구비서류’ 문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 •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개정 시 ‘A,B,C,D’ 삭제 필요 • 과거 전자결재시스템 활성화 이전의 내용으로 현재와 맞게 규정을 최신화 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장학위원회 심의 완료(2026.4.2.)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7조(장학금의 신청): 학과(부)장의 추천 삭제 •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A,B,C,D 삭제 • 제 12조(장학생명단의 통보): 학과(부) 및 사무처 통보 삭제 - (개정 후) 학생취업처장은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u>총장에게 보고</u> 한다.			
기대효과	• 효율적인 장학금 지급 운영 및 규정 최신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장학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u>학과(부)장의 추천을 받아<삭제></u>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학금신청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생취업처장이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정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장학금신청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생취업처장이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 없다고 정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우석희망장학금 <u>A,B,C,D<삭제></u>,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개발장학금, 우석챌프장학금, 미래융합대학 소속학생의 입학드림장학금과 성적장학금,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B경우에는 적용 제외 3. (삭제 2013.8.13.) ②(삭제 2013.8.13.)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 4. (삭제 2013.8.13.)	제8조(장학금수혜자격)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직전학기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우석희망장학금, 우석드림장학금, 취업역량개발장학금, 우석챌프장학금, 미래융합대학 소속학생의 입학드림장학금과 성적장학금, 외국인자비유학생장학금B경우에는 적용 제외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장학생명단의 통보) 학생취업처장은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u>해당학과(부) 및 사무처에 통보</u>한다.	제12조(장학생명단의 통보) 학생취업처장은 확정된 장학생 명단을 <u>총장에게 보고</u>한다.
<u><신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u> 이 규정은 2026년 월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입안서

규정명	「교내장학금시행규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생복지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우석희망장학금 A,B,C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등록금 범위 내에서 우석희망장학금을 감면할 수 없어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전액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이 우석희망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는지의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함.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시 우석희망장학금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 1항 1호~4호를 통합하고 이에 연관되는 4항도 삭제함 • 우석어린이집과 우석원격평생교육원은 폐지되었음. 우석원격평생교육원의 경우 폐지후 사이버평생교육원 신설되었으며, 사이버평생교육원은 교직원으로 분류되어 ‘교직원장학금’ 대상임으로 우석가족장학금에 해당되지 않음. 이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장학위원회 심의 완료(2026.4.2.)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우석희망장학금 통합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는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우석가족장학금) 제2항 - 우석어린이집, 우석원격평생교육원 삭제			
기대효과	• 규정 적용 대상자 명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내장학금시행규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①복지시설 출신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업료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우석희망장학금A : 보육원 등 복지시설 출신자 2. 우석희망장학금B : 기초생활수급자 3. 우석희망장학금C : 차상위계층 4. 우석희망장학금D :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 ② <삭제 2013.2.1.> ③ <삭제 2013.2.1.> ④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장학금은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I 유형 수혜자에게 수업료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10조(우석희망장학금) <u>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에게는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u>
제18조(우석가족장학금) ①법인사무국에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본인 : 등록금 50% 감면 2. 배우자 또는 자녀 : 등록금 전액 감면 ②우석대의료원, <u>우석어린이집<삭제></u>, 우석유치원, <u>우석원격평생교육원<삭제></u>에 근무하는 자,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1. 본인 : 등록금 50% 감면 2. 배우자 또는 자녀 : 등록금 50% 감면 ③전북일보 및 학교법인 우석학원에서 수탁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중 100만원을 감면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직전학기 성적이 80/100점 미만인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우석가족장학금) ① (현행과 같음) ②우석대의료원, 우석유치원에 근무하는 자, 그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본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금의 일부를 감면한다. 1. 본인 : 등록금 50% 감면 2. 배우자 또는 자녀 : 등록금 50% 감면 ③ ~ ④ (현행과 같음)
<u><신설></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스포츠단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스포츠단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장 운동부(육성종목)	제3장 운동부(육성종목)
제7조(육성종목 및 인원) ①전주스포츠지원센터의 육성종목은 태권도(겨루기), 축구(남), <u>배구(여)</u>, 사격(남,여) <u><종목 신설></u>으로 한다. ②진천스포츠지원센터의 육성종목은 야구(남), 농구(여), 핸드볼(남,여), 복싱(남,여)으로 한다. ③단, 본교예산, 선수수급, 체육회 지원, 경기실적 등을 고려하여 육성종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육성종목 및 인원) ①전주스포츠지원센터의 육성종목은 태권도(겨루기), 축구(남), <u>배구(남,여)</u>, 사격(남,여), <u>농구(남)</u>, <u>검도(남,여)</u>, <u>세팍타크로(남)</u>, <u>씨름(남)</u>으로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장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제5장 체육특기자 선발 및 관리
제20조(전주스포츠지원센터 선발종목 및 인원) 선발종목은 전주스포츠지원센터의 육성종목 태권도(겨루기), 축구(남), <u>배구(여)</u>, 사격(남,여) <u><종목 신설></u>로 하며, 인원은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완료 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0조(전주스포츠지원센터 선발종목 및 인원) 선발종목은 전주스포츠지원센터의 육성종목 태권도(겨루기), 축구(남), <u>배구(남,여)</u>, 사격(남,여), <u>농구(남)</u>, <u>검도(남,여)</u>, <u>세팍타크로(남)</u>, <u>씨름(남)</u>으로 하며, 인원은 매 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완료 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u><신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현행 규정은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학기 중 보직 임용 또는 해임 시 책임시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혼선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제1항 학기 중 임용된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임용된 시점부터 하고, 학기 중 보직을 면하는 경우 책임시간은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기대효과	• 보직교원의 책임시간 적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행정 처리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규정 제·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교원의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가. 부총장 : 0~3시간(연간) (개정 2016.2.18., 2022.5.24., 2024.6.5.) 나. 교무위원 : 3시간(연간 6시간) 다. 창업지원단장, 혁신사업단장, 미래융합대학장, 평생교육원장, 부처장, 산학협력부단장, 스포츠단부단장,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부단장과 본부장 : 4시간(연간 8시간) (신설 2023.8.30.), (개정 2024.2.15., 2024.6.5., 2024.9.30., 2025.10.30., 2026.2.27.) 라. 행정부서 실·팀장(교직부장, IR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역량개발인증센터장, 글로벌교육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양교육지원센터장,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평생학습지원센터장, 입학지원센터장, 전공설계지원센터장, ASEM센터장, 학생복지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글로벌교육혁신센터장 포함), 도서관장, 전주 및 진천 RISE사업단 센터장과 팀장 : 5시간(연간 10시간) (개정 2014.11.6., 2018.6.28., 2018.10.24., 2019.1.8., 2020.2.19., 2020.3.3., 2021.3.4., 2022.11.16., 2023.8.30., 2023.12.29., 2024.6.5., 2024.9.30., 2025.10.30.) 마. <삭제 2015.2.4.> 바. <삭제 2015.2.4.> 2. 감경시간 가. 감경 2시간 : 한방병원장, 어린이집 관리교수, 우석대학교전주한방문화센터장, 한국어교육지원센터장, 공자아카데미원장, 신문방송사주간, 예비군대대장 (개정 2015.2.4., 2015.2.26., 2015.3.31., 2015.9.23., 2016.2.24., 2019.1.8., 2020.2.19., 2024.5.2., 2024.9.30.) 나. 감경 1시간 : 학과(부)장, 전공주임, 외국어교	제5조(보직교원의 책임시간 및 감경시간) ① 보직교원의 학기별 책임 및 감경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기 중 임용된 보직교원의 책임시간은 임용된 시점부터 하고, 학기 중 보직을 면하는 경우 책임시간은 해당 학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보직을 겸할 경우 책임시간이 적은 보직을 기준으로 한다. 1. 책임시간: 작동 2. 감경시간: 작동

현행	개정 (안)
육지원센터장, 공용장비지원센터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보건진료센터장, 박물관장, 종합실습본부장, 평생교육주간교수, 대학원전공주임, 창업교육·지원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취업역량개발센터장, 창업역량개발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기업지원센터장, 산학연교육지원센터장, 기술이전센터장,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지역혁신센터장, 발달장애아치료교육원장, 산학협력정보통합센터장 (개정 2008.10.16., 2009.9.3., 2010.6.22., 2012.7.26., 2016.2.24., 2019.1.8., 2020.2.19., 2021.3.4., 2022.11.16., 2023.7.27., 2024.9.30., 2026.1.1.) ② <삭제 2012.1.1.> (개정 2006.10.20., 2008.2.20.)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장이 책임시간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본교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의 연구자로서 연구비지급기관에서 책임시간 조정을 요구한 경우 2.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원 3. 본교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된 경우 4. 학문단위 평가·인증을 위하여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단, 감경에 따른 논문실적 제출) (신설 2024.5.2.) 5. 교원이 1년 이내에 정년퇴직하는 경우 6. 기타 총장이 책임시간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2012.1.1.> (항 신설 2009.11.16.) [조문개정 2008.2.20., 2012.1.1.]	② 좌동 ③ 좌동 ④ 좌동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00.00.)</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우석대학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기획팀, 입학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개정 사유 - 산업 수요 기반 첨단·특성화 분야 학과 신설 및 개편, 단과대학 재구조화, 휴먼테크융합대학, 체육대학은 학과별 입학정원 모집 외에 통합모집을 통한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외국인 유학생 전담 모집단위 신설 등 2027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안) 마련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관계법령)	• 교무위원회 심의(2026. 4. 6.), 대학평의회 심의(2026. 4. 6.)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모집중지(7개학과, -148명) - 전주캠퍼스: 관광학과, 재활상담학과, 제약공학과 - 진천캠퍼스: 경찰학과, 컴퓨터공학과, 산림조경원예학과, 산업안전소방학과 • 입학정원 조정(순증 42명) - 일부 학과 통합모집 정원 감축 및 학부·학과별 정원 조정 실시 - 휴먼테크자율전공학부·체육자율전공학부 신설(전주·진천) 등 • 학과(부) 신설(정원 내 4개학과, 106명/정원 외 2개학과) - 전주캠퍼스: AI융합학부 - 진천캠퍼스: 경찰범죄심리학과, 소방산업안전학과, AI융합심리치유학과 - 전주·진천캠퍼스: 글로벌첨단융합학부*, 국제학부* *학부: 외국인 유학생 전담/정원 외 모집 • 단과대학 개편 - (신설 및 개편) 보건대학, 체육대학, AI융합대학, 글로벌라이프대학 신설 및 기존 단과대학 개편을 통해 학문단위 구조 고도화 및 특성화 체계 구축			
기대효과	• 변화하는 대학 환경과 사회수요를 반영하여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	교원 대상 공청회 실시(2026. 3. 30.)		
	다. 의견제출 유무	해당사항 있음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학과(부) 의견수렴, 공청회, 학생간담회를 통한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마련		
첨부자료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우석대학교 학칙」 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단과대학) ①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휴먼테크융합대학, <u>수소테크융합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양대학, 미래융합대학을 둔다. 단과대학별 학과(부)는 별표 1-1과 같다.</u>	제5조(단과대학) ①본교에는 단과대학으로 휴먼테크융합대학, <u>보건대학, 체육대학, 수소테크융합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간호대학, 교양대학, 미래융합대학, 글로벌라이프대학, 국제대학을 둔다.</u>
②본교의 모집단위별 정원은 매 학년도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u>1-2와</u> 같다.	②본교의 모집단위별 정원은 매 학년도마다 총장이 따로 정하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u>1-3과</u> 같다.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00.00.))</u> <u>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학과(부)신설, 모집중지, 학과(부) 명칭변경, 단과대학 개편) 2027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학과(부) 신설, 모집중지, 학과(부) 명칭변경, 단과대학 개편을 시행한다.</u> 1. 학과(부)신설 가. AI융합학부 나. 경찰범죄심리학과(진천) 다. 소방산업안전학과(진천) 라. AI융합심리치유학과(진천) 마. 글로벌첨단융합학부(전주/진천) 바. 국제학부(전주/진천) 2. 모집중지 가. 관광학과 나. 재활상담학과 다. 제약공학과 라. 경찰학과(진천) 마. 컴퓨터공학과(진천) 바. 산림조경원예학과(진천) 사. 산업안전소방학과(진천) 3. 학과(부) 명칭변경 가. 호텔외식조리학과 → 조리제과제빵학부 나. 전기자동차공학부 → AI모빌리티공학부 다.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진천) → 건축학부(진천) 라. 글로벌문화경영학부(진천) → 글로벌디자인문화경영학부(진천) 마. 생명과학과(진천) → 바이오융합학과(진천)

현행	개정(안)
	4. 단과대학 신설: 보건대학, 체육대학, AI융합대학, 국제대학, 글로벌라이프대학 5. 단과대학 소속 변경 가. 휴먼테크융합대학 → 보건대학 -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나. 휴먼테크융합대학 → 체육대학 -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생활체육학부(진천), 스포츠문화예술학부(진천) 다. 휴먼테크융합대학 → AI융합대학 - 정보보안학과 라. 미래융합대학 → 글로벌라이프대학 - 창업컨설팅학과(진천) 제3조(모집중지, 학과(부) 명칭변경, 단과대학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학과(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제2조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단과대학, 학과(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된 단과대학, 학과(부)의 재적생으로 보며, 2027학년도 이전에 입학하여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단과대학, 학과(부)로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본인이 입학 당시의 단과대학, 학과(부)로 이수하기를 희망할 경우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별표1-3]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안) (신설 2026.00.00.)

캠퍼스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명	입학정원	통합모집 입학정원
전주	휴먼테크융합대학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전주)	-	31
		아동사회복지학부	30	-
		심리학과	25	
		군사학과	45	
		조경학과	25	
		조리제과제빵학부	45	
		식품영양학과	25	
		경찰행정학과	30	
		소방방재학과	40	-
	보건대학	작업치료학과	30	
		물리치료학과	40	
		응급구조학과	40	
	체육대학	체육 자율전공학부(전주)	-	20
		체육학과	55	-
		태권도학과	70	-
		스포츠지도학과	58	-
	수소테크융합대학	수소테크 자율전공학부	-	65
		(수소에너지공학과)	-	-
		(경영학부)	-	-
		(AI모빌리티공학과)	-	-
	AI융합대학	정보보안학과	25	-
		AI융합학부	25	-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
		유아특수교육과	25	-
		국어교육과	23	-
	약학대학	약학과(6년제)	40	-
		한약학과	40	-
한 의과대학	한의예과	30	-	
간호대학	간호학과	160	-	
미래융합대학*	스마트관광학과	10	-	
	심리운동·상담학과	10	-	
	수소모빌리티학과	15	-	
진천	휴먼테크융합대학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진천)	-	17
		군사안보학과	30	-
		문예창작학과	20	-
		건축학부	35	-
		경찰범죄심리학과	25	-
		글로벌디자인문화경영학부	20	-
		바이오융합학과	27	-
	체육대학	체육 자율전공학부(진천)	-	15
		생활체육학부	55	-
		스포츠문화예술학부	55	-
	글로벌라이프대학*	글로벌라이프 자율전공학부	-	81
		(창업컨설팅학과)	-	-
		(소방산업안전학과)	-	-
		(AI융합심리치유학과)	-	-
전주/진천	국제대학**	글로벌첨단융합학부	-	-
		국제학부	-	-
소 계			1,258	229
총 계			1,487	

-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전주): 아동사회복지학부, 심리학과, 군사학과, 조경학과, 조리제과제빵학부, 식품영양학과, 경찰행정학과, 소방방재학과
- 휴먼테크 자율전공학부(진천): 군사안보학과, 문예창작학과, 건축학부, 경찰범죄심리학과, 글로벌디자인문화경영학부, 바이오융합학과
- 수소테크 자율전공학부: 수소에너지공학과, 경영학부, AI모빌리티공학부
- 글로벌라이프 자율전공학부: 창업건설팅학과, 소방산업안전학과
- 체육 자율전공학부(전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스포츠지도학과
- 체육 자율전공학부(진천): 생활체육학부, 스포츠문화예술학부
- * 미래융합대학, 글로벌라이프대학: 성인학습자 전담 모집단위
- ** 국제대학: 정원외 유학생 전담 모집단위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팀	관련부서	평생교육원	
부서간 협의 결과	• 사업 종료에 따른 협의 주체 없음 • 담당 교수 (남궁승필 / 군사학과 교수) 동의 완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회	•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2024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완료 - 사업기간: 2024.3.1.~2026.2.28.			
관련근거 (관계법령)	•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26조의 4(특별기구) - 특별기구에서 통일교육센터를 삭제			
기대효과	• 불필요한 조직을 정비하여 조직 슬림화 및 운영 효율성 향상 • 현재 수행 중인 기능 중심으로 직제의 현실 적합성 강화 • 실제 운영되지 않는 조직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대외적 신뢰성 확보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 2024년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통보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6조의 4(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 통일교육센터 를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제26조의 4(특별기구) 특별기구에 혁신사업단을 두고 총장직속으로 운영한다.
<u><신설></u>	부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구표	[별표] 기구표 (개정 2026.00.00.)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칙」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학사지원센터																																							
부서간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대학평의위원회	• 심의 해당																																											
입안사유 (추진배경)	• 교육부의 대학원 학과 설치 및 박사과정 설치 등의 기준 강화 - 설치 당시 기준 및 박사과정의 참여 교원 연구실적 유지 요구 - 이에 따른 연구실적 조정 및 유지 및 관리 규정 마련 • 교원양성기관 평가결과 반영 및 학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 •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 규정 제정에 따른 개정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4.08.)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조(학위 과정)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조정 <table><tr><th>현행</th><th>개정(안)</th></tr><tr><td>석사학위과정</td><td>1.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td></tr><tr><td>박사학위과정</td><td>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td></tr><tr><td>학·석사통합과정</td><td>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td></tr><tr><td>석·박사통합과정</td><td>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td></tr><tr><td></td><td>5.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td></tr></table>							현행	개정(안)	석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석사통합과정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5.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																									
	현행	개정(안)																																										
	석사학위과정	1.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학·석사통합과정	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5.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																																											
• 교육부 대학원 학과 설치 기준의 유지 요구에 따른 개정 - 학과 설치 시 기준과 박사과정 논문편수 기준 조정 - 설치 기준 유지 및 유지불가 시 모집단위 조정 내용																																												
•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 1】학과 신설 및 모집증지 반영 - 입학정원 조정 <table><tr><th colspan="2">조정</th><th rowspan="2">캠퍼스</th><th rowspan="2">과정</th><th rowspan="2">배정 인원</th><th rowspan="2">기존 인원</th><th rowspan="2">최종 인원</th></tr><tr><th>FROM</th><th>TO</th></tr><tr><td>교육대학원 (-15명)</td><td rowspan="4">일반대학원 (+21명)</td><td rowspan="2">전주</td><td>석사</td><td>(+)11</td><td>88</td><td>99</td></tr><tr><td></td><td>박사</td><td>(+) 4</td><td>41</td><td>45</td></tr><tr><td rowspan="2">국방정책대학원 (-3명)</td><td rowspan="2">진천</td><td>석사</td><td>(+) 3</td><td>10</td><td>13</td></tr><tr><td>박사</td><td>(+) 3</td><td>5</td><td>8</td></tr><tr><td>지역혁신융합경대학원 (-3명)</td><td></td><td>계</td><td></td><td>(+)21</td><td>144</td><td>165</td></tr></table>							조정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교육대학원 (-15명)	일반대학원 (+21명)	전주	석사	(+)11	88	99		박사	(+) 4	41	45	국방정책대학원 (-3명)	진천	석사	(+) 3	10	13	박사	(+) 3	5	8	지역혁신융합경대학원 (-3명)		계		(+)21	144	165
조정		캠퍼스	과정	배정 인원	기존 인원	최종 인원																																						
FROM	TO																																											
교육대학원 (-15명)	일반대학원 (+21명)	전주	석사	(+)11	88	99																																						
			박사	(+) 4	41	45																																						
국방정책대학원 (-3명)		진천	석사	(+) 3	10	13																																						
			박사	(+) 3	5	8																																						
지역혁신융합경대학원 (-3명)		계		(+)21	144	165																																						
- 학과신설: (전주캠)일반대학원 군사학과 박사과정, (진천캠) ESG·공공정책학과 석사, 박사과정 - 모집증지: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 제27조(학기당 이수학점)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 신설에 따른 학기 당 이수학점 조정: 12학점																																												
기대효과	• 연구자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 • 학과 설치 기준 유지를 위한 명확한 규정 제시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u>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호 신설></u> ② ~ ⑤ 생략 ⑥<u>각 대학원</u>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 <u><항 신설></u> <u><참고자료></u>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2] <u><개정 2024. 2. 20.></u>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 (제2조의2제1항 관련) <table><tr><th>구분</th><th>대학원 신설</th><th>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th><th>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th></tr><tr><td>일반 대학원</td><td></td><td>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td>·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전체 학점수를 기준 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td></tr><tr><td>전문 대학원</td><td>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td><td></td><td>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tr><tr><td>특수 대학원</td><td></td><td>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td><td></td></tr></table> ⑧<u><문구신설></u>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u>신설</u>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1 이상의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박사학위 과정의<u><문구신설></u> 설치 학기 개시일<u><문구신설></u>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u>4편</u> 이상, 예·체능계열 <u>3편</u>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u>6편</u> 이상이어야 한다. 단,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	구분	대학원 신설	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일반 대학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전체 학점수를 기준 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 대학원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 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제3조(학위 과정) ①일반대학원에는 <u>다음 각 호와 같은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1.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u> <u>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u> <u>3.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u> <u>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u> <u>5. 학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연계과정</u> ② ~ ⑤ 생략 ⑥<u>특수대학원</u>은 학사학위과정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⑦<u>학과는「대학설립·운영규정」의 ‘대학원 및 학위과정의 학과 등 전공의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u> ⑧<u>제7항의 기준에 의해 설치된 학과 중</u>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u>하거나 운영</u>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1 이상의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이 박사학위 과정의 <u>신설 시에는</u> 설치 학기 개시일, <u>운영 시에는 매 학기 개시일</u>을 기준으로 인문·사회계열 <u>3편</u> 이상, 예·체능계열 <u>2편</u> 이상,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u>4편</u> 이상이어야
구분	대학원 신설	석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등(전공) 신설														
일반 대학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 전체 학점수를 기준 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 이상														
전문 대학원	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교사시설 및 교원을 확보하되, 편제완성 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 정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명으로 본다.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특수 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 확보															

현 행	개 정(안)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고시 <u><문구신설></u>에 따른다. ⑨<항 신설> ⑩<항 신설> ⑩각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2026.3.25.) ② ~ ③ 생략 제2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② 생략 ③<항 신설> ③선수과목은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문구수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전공)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한다. 단,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에 대한 인정 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고시 <u>‘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u>에 따른다. ⑨학과는 제7항과 제8항의 이행 실태를 매학기 개시 전에 교학팀에 통보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집중지할 수 있다. ⑩9항으로 모집중지된 학과의 경우, 유지기준을 충족 후 재설치를 요청하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설치할 수 있다. ⑩각 대학원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①각 대학원의 학과 및 학생정원은 <u>별표1</u>과 같다. (개정 2011.5.19, 2011.12.14, 2012.5.23, 2012.11.30, 2013.6.3, 2013.10.30, 2014.11.27, 2015.1.21., 2015.11.12., 2016.5.27., 2016.11.16., 2017.11.06., 2018.6.25., 2019.3.21., 2019.8.1., 2019.12.3., 2020.3.26., 2020.10.29., 2021.7.6., 2021.12.27., 2022.4.14., 2022.9.30., 2022.12.16., 2023.2.20., 2023.5.18., 2023.11.24., 2024.5.30., 2024.10.28., 2024.12.26., 2025.01.21., 2025.2.27., 2025.4.29., 2025.5.30., 2025.6.26., 2025.8.25., 2025.11.13., 2026.3.25., <u>2026.00.00.</u>) ② ~ ③ 현행과 동일 제27조(학기당 이수학점)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은 매 학기 12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은 학기당 이수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과(전공)의 요청으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안)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별표 1】 대학원별 학과 및 정원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 전주캠퍼스					- 전주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학과	입학 정원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교 육 학 과		인문 사회	교 육 학 과		교 육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아 동 복 지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특 수 교 육 학 과	
	글로벌경영학과		-			글로벌경영학과		-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심 리 운 동 학 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심 리 학 과	
	-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스포츠복지교육학과	
	-		-			-		-	
	예 술 경 영 학 과		-			예 술 경 영 학 과		-	
자연 과학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자연 과학	놀이심리재활학과		놀이심리재활학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한 국 어 교 육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외 식 경 영 학 과	
	관광문화경영학과		-			관광문화경영학과		-	
	(신 설)		(신 설)			군 사 학 과		군 사 학 과	
	약 학 과	88	약 학 과	41명		약 학 과	99	약 학 과	45명
	식품생명공학과	20명	식품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20명	식품생명공학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한 약 학 과	
	-		-			-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가정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간호학과(감염관리전문간호사)		-	
	재 활 학 과		-			재 활 학 과		-	
	-		-			-		-	
	물 리 치 료 학 과		-			물 리 치 료 학 과		-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		공학	전기전자공학과		-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동아시아조경학과		조 경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자 동 차 공 학 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제약·화장품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수소모빌리티공학과		-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의학	수소에너지공학과		수소에너지공학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한 의 학 과	
예체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예체능	체 육 학 과		체 육 학 과	
	-		-			-		-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태 권 도 학 과	
	-		스 포 츠 과 학 과			-		스 포 츠 과 학 과	
계 31개 학과 88명					계 31개 학과 99명 27개 학과 45명				
※ () 안의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임					※ () 안의 인원은 가정전문간호사과정(10명), 감염관리전문간호사과정(10명) 정원임				

현행					개정(안)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인문사회	경영학과 (신설)	10명	- (신설)	5명	인문사회	경영학과 ESG·공공정책학과	13명	- ESG·공공정책학과	8명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자연과학	생명과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공학	컴퓨터공학과		-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건설공학과		건설융합시스템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체능	스포츠융합학과		스포츠융합학과	
	예술학과*	-	예술학과*	-					
계	6개 학과	10명	2개 학과	5명	계	7개 학과	13명	3개 학과	8명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 예술학과*는 외국인전담학과임				
2. 교육대학원					2. 교육대학원				
- 전주캠퍼스					- 전주캠퍼스				
학과	전공			입학정원	학과	전공			입학정원
교육 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교육<삭제>,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60명	교육 학과	특수교육, 상담심리, 체육교육, 무용교육, 유아특수교육, 인공지능융합교육			45명
계	7개 전공			60명	계	6개 전공			45명
3. 경영문화대학원: 생략					3. 경영문화대학원: 현행과 같음				
4. 국방정책대학원					4. 국방정책대학원				
- 전주캠퍼스					- 전주캠퍼스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국방정책학과 군상담당학과		18명			국방정책학과 군상담당학과		15명		
2개 학과		18명			2개 학과		15명		
5. 소방방재대학원: 생략					5. 소방방재대학원: 현행과 같음				
6. 지역혁신융합경영대학원					6. 지역혁신융합경영대학원				
- 진천캠퍼스					- 진천캠퍼스				
학과		입학정원			학과		입학정원		
융합경영학과 바이오융합학과		12명			융합경영학과 바이오융합학과		9명		
산업안전소방학과 공공정책학과					산업안전소방학과 공공정책학과				
4개 학과		12명			4개 학과		9명		

현 행				개 정(안)			
【별표 2】				【별표 2】			
학 위 종 별				학 위 종 별			
1. 일반대학원				1. 일반대학원			
계열	학 과	학 위 종 별		계열	학 과	학 위 종 별	
		석 사	박 사			석 사	박 사
인문 사회	-	-	-	인문 사회	-	-	-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과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아 동 복 지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특 수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글 로 벌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	-	-		-	-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심 리 운 동 학 과	심리운동학석사	심리운동학박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문 학 석 사	문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교 육 학 석 사	교 육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심 리 학 과	심 리 학 석 사	심 리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경 영 학 과	-	경 영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관 광 경 영 학 과	-	관 광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사회적경제·경영학과	사회경제학석사 경 영 학 석 사	사회적경제학박사 경 영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소 방 방 재 학 과	소 방 방 재 학 석 사	소 방 방 재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과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석 사	스 포 츠 복 지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국 제 교 육 문 화 학 과	-	교 육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문 학 박 사		예 술 경 영 학 과	예 술 경 영 학 석 사	문 학 박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놀 이 심 리 재 활 학 과	놀 이 심 리 재 활 학 석 사	문 학 박 사
	한 국 어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		한 국 어 교 육 학 과	문 학 석 사	-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외 식 경 영 학 과	경 영 학 석 사	경 영 학 박 사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관 광 문 화 경 영 학 과	관 광 학 석 사	-
	(신 설)	(신 설)	(신 설)		군 사 학 과	ESG경영학석사	군 사 학 박 사
	(신 설)	(신 설)	(신 설)		ESG·공공정책학과	ESG경영학석사 공공정책학석사	ESG경영학박사 공공정책학박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자연 과학	약 학 과	약 학 석 사	약 학 박 사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생 명 과 학 과	이 학 석 사	-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식 품 생 명 공 학 과	이 학 석 사	이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한 약 학 과	한 약 학 석 사	한 약 학 박 사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가 정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간 호 학 과 (감 염 관 리 전 문 간 호 사)	간 호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재 활 학 과	재 활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작 업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물 리 치 료 학 과	이 학 석 사	-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전 기 전 자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동 아 시 아 조 경 학 과	공 학 석 사	-
공학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공학	컴 퓨 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건 설 융 합 시 스템 학 과	-	공 학 박 사		건 설 융 합 시 스템 학 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조 경 학 과	-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자 동 차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제 약 · 화 장 품 공 학 과	-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재 난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소 방 · 안 전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수 소 모 빌 리 티 공 학 과	공 학 석 사	-
	수 소 에 너 지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수 소 에 너 지 공 학 과	공 학 석 사	공 학 박 사

현 행				개 정(안)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의학	한 의 학 과	한 의 학 석 사	한 의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체 육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	-	-		-	-	-
	-	-	-		-	-	-
예능	태 권 도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예능	태 권 도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 포 츠 과 학 석 사	스 포 츠 과 학 박 사		스 포 츠 과 학 과	스 포 츠 과 학 석 사	스 포 츠 과 학 박 사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석 사			예 술 학 과	예 술 학 석 사	
	스 포 츠 융 합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스 포 츠 융 합 학 과	체 육 학 석 사	체 육 학 박 사
<u><신설></u>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정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원의 모집정원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 한다.			

<참고자료>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시행 2024. 4. 29.] [교육부고시 제2024-7호, 2024. 4.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대학설립·운영규정」제2조의2제4항에 따라 대학이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하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할 연구실적 인정범위와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전문학술지 :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등재 학술지, 등재후보 학술지
 2. 국제 전문학술지 : SCIE, SSCI, A&HCI
 3. 국제 일반학술지 : SCOPUS
- ② 국내전문학술지 논문은 1편으로 인정(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논문은 2편으로 인정한다)하고, 공동논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2/(n+2)편, 기타 공동저자는 1/(n+2)편으로 인정한다.
 2. n은 학술지 논문에 표시된 총 저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2배를, 국제 일반학술지 논문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1.5배를 부여한다.

제3조(저술 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저·역서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전문학술서적 단행본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일반교양서적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저서는 단독저서의 경우 1편으로 인정, 공동저서는 1/n편으로 인정한다(n은 저·역서 등에 표시된 총 저·역자 수이고, 총 저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으로 처리하며, 계산결과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 수준의 저술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1.5배를 인정한다.
- ④ 번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7배, 편저·편역서는 제2항에 따른 편수의 0.4배를 인정한다.

제4조(실기 등의 실적 인정 세부기준) ① 예·체능 계열은 실기활동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하되 [별표1]에 따른 분야별 작품 활동 실적에 따라 편수를 계산한다.

- ② 동일 작품을 중복하여 전시·공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5조(지식재산권 등록실적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 ①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② 국내특허실적은 단독특허인 경우 0.5편으로 인정, 공동특허는 0.5/n편으로 인정한다(n은 등록증에 명시된 총 발명자 수이며, 계산결과는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외국특허실적은 2배로 인정한다).
- ③ 실용신안·의장·프로그램저작권은 제2항에 따른 인정편수의 0.5배를 인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7호, 2024. 4.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관)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팀		관련부서	교학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심의 해당			
대학평의회	• 해당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대학원 학칙 개정 내용 반영(제4조(학과 편성 및 정원) 【별표 1】)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2026.04.08.)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36조(기구표) 별표 개정 - 전주캠퍼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에 ‘군사학과’ 삽입 - 전주캠퍼스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유아교육전공’ 삭제 - 진천캠퍼스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ESG·공공정책학과’ 신설			
기대효과	•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있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직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2024.6.27., 2024.8.28., 2024.9.30., 2024.11.5., 2024.12.26., 2025.2.13., 2025.2.27., 2025.4.29., 2025.5.28., 2025.6.26., 2026.1.1., 2026.2.27.)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2024.6.27., 2024.8.28., 2024.9.30., 2024.11.5., 2024.12.26., 2025.2.13., 2025.2.27., 2025.4.29., 2025.5.28., 2025.6.26., 2026.1.1., 2026.2.27., 2026.00.00.)
<u><신설></u>	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6.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절 외국어시험 제59조(응시자격) ①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사학위 과정 :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 과정 :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u>3. <호 신설></u> <u>4. <호 신설></u> ② 생략	제1절 외국어시험 제59조(응시자격) ① 학위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사학위 과정 :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학위 과정 : 2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u>3. 학·석사연계과정 : 1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u> <u>4.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u> ② (현행과 동일)
제2절 종합시험 제69조(응시자격 및 면제) ①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는 재학중이거나 각 과정을 수료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박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다. <삭제 2023.8.23.> <u>라. <호 신설></u> <u>마. <호 신설></u> 2. ~ 3. 생략 ② 생략	제2절 종합시험 제69조(응시자격 및 면제) ① 학위취득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는 재학중이거나 각 과정을 수료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 - 박사학위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 예정자다. <삭제 2023.8.23.> <u>라. 학·석사연계과정: 1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 예정자</u> <u>마.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 3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예정자</u> 2. ~ 3.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78조(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①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는 학위청구논문제출 2학기 전에 연구윤리 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 편집자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 제출한 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의 인정여부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u>③ <항 신설></u>	제78조(학위청구논문연구계획서) ①~② (현행과 동일) <u>③ 위 항과 별도로 학·석사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입</u>

현행	개정(안)
	학 후 1학기에,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생과 석·박사통합과정생은 대학원 입학 후 3학기에 학위청구 논문연구계획서를 연구윤리준수서약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학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관련학과
부서간 협의 결과	• 특이사항 없음		
법인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AI 관련 국가 사업 및 학과의 요구 반영을 위한 규정 제정 - AI 관련 국가사업의 필요에 의한 제정 - 일부 학과의 진단평가 대비 요구 반영 -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전형 계획 반영		
관련근거 (관계법령)	• 대학원위원회 심의 완료(2026.04.08.)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연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정 -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 - 각 과정에 대한 모집정원 마련 -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기준 - 중도탈락자에 대한 조치 마련 등		
기대효과	• 연구자 양성을 위한 규정 마련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안)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안)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조에 따라 대학원 연계과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학·석사연계과정(이하 “석사연계과정”)은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이 상호 연계된 과정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②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이하 “박사연계과정”)은 학사과정과 대학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해 석사학위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모집단위) 일반대학원을 대상으로 하며, 석사연계과정은 석사과정, 박사연계과정은 석·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된 학과만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모집인원) ①석사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20%(소숫점 아래는 버림), 박사연계과정은 박사과정 입학정원 20%(소숫점 아래는 버림) 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 시 일반전형 모집인원으로 전환한다.

제5조(지원자격) ①학과(부)와 대학원의 학과(전공)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학과의 재학생(6년제 학과 재학생은 제외)

②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3학년 이상 재학생
2. 신청 전 학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고, 8차 학기 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자
3.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6학기 초 내지 7학기 초에 각 과정 신청절차를 진행한 자

제6조(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학생 선발은 매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전형방법은 대학원 각 학과에서 재학 중 성적, 추천내용, 연구활동계획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별지 제7호 서식)

③대학원장은 매학기 말까지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중지원은 불허한다.

제7조(제출서류)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성적증명서(성적표) 1부
4. 연구활동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제8조(수업연한) ①석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 박사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최소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과정 : 4년
2. 석사과정 : 1년

3. 석·박사통합과정: 2.5년

제9조(학점이수) ①각 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 입학 후 심사를 거쳐 연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각 과정의 이수학점은 각 과정의 졸업학점을 합산한 학점으로 한다.

③각 과정의 중도 포기자가 이수한 대학원 전공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까지 석사과정에 학점으로 인정한다.

제10조(연계과정 운영 등) ①대학원 학과의 주임교수는 각 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기에 대학원 과정과 연계한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학생은 지원 시 제출한 연구활동계획서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사과정 졸업시까지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이 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학과가 모집중지된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유사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학과(부)로의 입학이 가능하다.

제11조(과정포기자 및 탈락자)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과정포기자 및 탈락자로 본다.

1. 자퇴 및 제적자
2. 학사과정 수료자
3. 대학원 입학 포기자
4. 학업성적 부진, 연구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한 자
5. 기타의 사유로 과정 진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1항 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포기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④과정포기자 또는 탈락자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위증서(학위기)를 수여한다.

제12조(학사과정 졸업 및 대학원 입학) ①각 과정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각 대학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자를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 학사과정의 수업연한 및 성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대학원 석사연계과정과 박사연계과정에 입학한 자
3. 연구활동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한 자

②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학부 학적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졸업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발된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석사연계과정 또는 박사연계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④각 참여 학과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이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사과정 졸업이수학기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등록, 휴학) ①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학원 입학 후 석사연계과정자는 2학기 이내에, 박사연계과정자는 5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수료시까지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학생에 대한 특례) ①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입학 시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각 과정에 선발된 학생은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④학사과정 재학 중에 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사무분장)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1. 과정신청 : 대학원 교학팀(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글로벌교육지원센터에서 신청한다)

2. 모집인원 배정 : 대학원 교학팀

3. 학부과정 장학지원: 학생복지팀

4. 연계과정 운영 및 관리: 대학원 교학팀

제16조(준용) ①연계과정 학생이 학사과정 재학 중에는 학부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대학원 재학 중에는 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하되,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대학원 지원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성적		총이수학점	학점
주소	(E-mail :)		
휴대폰			
학업계획	※ 학부 재학중 대학원 학점 취득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석사 석사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1. 추천서 1부. 2. 성적표 1부 3.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 ·접수증			
성명		주민번호	
대학원 지원학과			
위와 같이 학·석사 석사연계과정에 지원·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_____ (인)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서

대학원 지원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이수학년/학기	
총평균성적		총이수학점	학점
주소	(E-mail :)		
휴대폰			
학업계획	※ 학부 재학중 대학원 학점 취득 등 학점이수계획 중심으로 작성		

위와 같이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1. 추천서 1부. 2. 성적표 1부 3.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 ·접수증			
성명		주민번호	
대학원 지원학과			
위와 같이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에 지원·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확인자 _____ (인)

연구활동계획서

대학원 지원학과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명		학번		학년	

연구활동계획	
1. 자기소개	
2. 진학 동기	
3. 졸업 후 진로	
4. 전공 연구 계획	

20 년 월 일

학·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자 학부졸업신청서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년
성명		학번		

학·석사석사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생으로 지원을 위한 (조기)졸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성적

기취득학점			총평균 성적	금학기 신청학점			총 학점		
학부	학점		/100	학부	학점		학부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대학원	학점	학점

2. (조기)졸업 예정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첨부: 성적증명서 1부

학부 학적 담당자확인
(/ /)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서 약 서

□ 지원자 인적사항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성명		연락처		
주소						

□ 서약서

대학원 연계과정 운영규정

제11조(과정포기자 및 탈락자)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과정포기자 및 탈락자로 본다.

1. 자퇴 및 제적자
2. 학사과정 수료자
3. 대학원 입학 포기자
4. 학업성적 부진, 연구활동보고서 미제출 등 연구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지도교수가 판단한 자
5. 기타의 사유로 과정 진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 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학과(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5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매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포기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8호 서식)

④ 과정포기자 또는 탈락자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학위증서(학위기)를 수여한다.

제13조(등록, 휴학) ①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학원 입학 후 석사연계과정자는 2학기 이내에, 박사연계과정자는 5학기 이내에 수료하지 못할 경우 수료시까지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인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_____ (서명)

보호자 _____ (서명)

학·석사 및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지원자 평가표

학부(과)		지원학과		성명	
평가항목			점수		
성적			/40		
연구활동계획서			/20		
면접			/40		
합계					
의견란					

-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인원이 모집정원보다 많은 경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_____ (서명)

대학원장 귀하

☐ 학·석사 석사연계과정

☐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

포기원

소속	대학			학과(부)	전공
학번		연락처			
대학원 지원학과					
대학원 지원전공					
성명		생년월일			
포기사유					
본인은 우석대학교 ☐ 학·석사 석사연계과정 / ☐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위와 같은 사유로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서명) 지도교수 _____ (서명) 우석대학교총장 귀하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안)

[제정 2026.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박사통합과정 (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통합과정이란 석사교육과정과 박사교육과정이 통합된 박사과정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학위 취득 없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①통합과정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대학원 학과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통합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

③통합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통합된 단일 교과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입학정원) 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과정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전형방법) 통합과정의 선발방법 및 전형방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8학기로 한다. 다만, 통합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1.5년 범위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②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이수학점) 통합과정의 이수학점은 60학점으로 한다.

제8조(중도 포기자 또는 중도 탈락자) ①중도 포기자는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 기간 내에 학칙 제 21조에 의하여 포기원을 소속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첨 제1호 서식)

②중도 포기자 중 석사학위 취득을 원하는 경우 학칙에서 정한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자에 한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로써 통합과정 이수를 종결 시킨다.

③중도 포기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학과의 석사학위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으로 변경은 불허한다.

제9조(중도 포기자 또는 탈락자에 대한 조치) ①중도탈락 학생은 학과에 수학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학생으로 매 학기 학적변동 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소속학과 주임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중도포기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과 주임교수는 즉시 대학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당하는 학생 중 학칙 제3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때 재학연한이 늘어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석사학위를 수여한 학생 중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해당 통합과정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제10조(박사과정 재학인정) ①통합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공학점 24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한다.

②박사과정 재학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한 학적관계 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박사과정 재학중”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석·박사학위의 수여) 학위수여는 학칙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석·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석 · 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원

소 속	학과 (전 공)		
성 명		학 번	

※ 유의사항 : 석 · 박사통합과정 중도 포기는 4학기 이상 등록 후에 제출이 가능함

상기 본인은 () 사정으로 인하여
석 · 박사통합과정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본 인 : _____(인)

확인자 지도교수 : _____(인)

주임교수 : _____(인)

대학원장 귀하